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3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124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청장

소송대리인 [redacted]

변 론 종 결 2020. 7. 7.

판 결 선 고 2020. 9. 15.

주 문

1. 피고가 2019.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972,111,500원, 가산세 1,630,946,180원, 농어촌특별세 299,856,350원, 가산세 135,190,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3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7. [redacted]시 [redacted]구 B에 연면적 합계 35,055.07㎡(이후 증축으로 연면적 합계가 35,103.58㎡로 변경되었다) 규모의 주 건물 2동으로 구성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94,838,059,2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96,882,650원을 신고하고, 같은 달 26. 이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5. 9. 11.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계약 변경으로 감액된 도급액에 관하여 취득세를 경정하고, 29,699,69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라. [redacted]도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로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8. 12. 20. 피고에게 조사결과 통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9.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4,593,226,9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33,327,620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고,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건물 중 편의점, 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3

폐 용도로 타인에게 임대된 면적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부 채택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게 경기도지사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편의점, 카페 용도로 임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로 산정한 취득세 2,972,111,500원, 가산세 1,630,946,180원, 농어촌특별세 299,856,350원, 가산세 135,190,23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본점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려면 본점과 장소적으로 밀접하여야 하며, 본점의 주된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중추적인 의사결정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거리상으로도 약 30㎞ 떨어져 있어 원고 본점 ·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거나 그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는 연수시설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3

동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위 규정에 따른 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redacted]구청 소속 공무원과 협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중과세 대상인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지하 2층, 지상1층, 연면적 합계 5331.95㎡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건물과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합계 29,687.67㎡의 교육연구시설(연수원) 건물, 경비동인 부건물로 등록되었다.

2) 이 사건 건물에는 강의실, 토의실, 강사대기실 등이 속하는 교육연구시설, 식당, 주방, 매점, 헬스장, 샤워실 등이 속하는 복지시설, 약 187개의 객실로 구성된 숙박시설과 이를 위한 지원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3) 이 사건 건물의 유지비가 발생할 경우 원고 본사에 필요경비 발생사실이 보고되어 본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임대 수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본사의 수입으로 처리된다.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 본사 인사팀 소속 직원 10명 정도가 상시 근무하면서 연수시설의 관리와 교육 수행을 위한 일정수립, 교육장 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전국 각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의 직원,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3

고에 속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인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설계 및 판매를 위한 업무 기초지식 교육, 기존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상품 셀링포인트 교육 및 컨설팅 능력 향상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교육은 직원과 설계사들의 영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원고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교육은 통상적으로 2~3일, 길게는 1달간 전국 각지의 교육대상자들을 이 사건 건물에 집합시켜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5)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교육을 실시하는 용도로 사용함과 더불어 '테니스', '바둑대회', 'D', 'E', '대학생 인턴십'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고, 주말에는 원고의 직원과 설계사들이 이 사건 건물 내 객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9호증, 을 제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 ·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교통난, 주택난, 공해, 범죄 등의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및 산업을 적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3

하게 재배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바40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부대시설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과 같은 복지후생시설 등은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점의 사무소와 함께 설치되었더라도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업무수행, 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 또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본점의 '사무소' 내지 '그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의 직원 또는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업무에 관한 지식, 보험상품의 판매전략 등에 관한 것으로 원고의 인사관리, 경영전략, 마케팅과 같은 업무의 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본점에도 교육을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직원들이나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은 관리행위의 하나로서 본점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교육을 단순한 사실적 행위나 대외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영업행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3

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원고 본사의 비용과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는 점, ④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 형식과 내용상 부대시설을 사무소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본점의 시설 중 사무소가 아닌 것을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반드시 본점 사무소와 장소적으로 밀접한 곳에 위치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 본점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연수시설'로서 중과세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연수시설로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신뢰보호원칙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3

수시설을 포함한 복지후생시설의 경우 이러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입법목적과 관계가 없고, 과잉금지의 원칙상 중과세율의 적용범위를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기 위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로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② 이 사건 건물은 그 설비 측면에서 강의실, 식당, 숙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형태 측면에서도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이 짧은 기간 동안 머물며 집체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형적인 연수시설에 해당한다. 이 사건 건물의 주 건물 1개동은 건축물대장에 연수원으로 분류되어 등재되기도 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시설에 해당할 뿐 복지후생시설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연수'는 사전적으로 '학문 따위를 연구하고 닦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수시설의 본질상 시설 내에서의 교육이 전제되어 있는 점, ㉡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복지만을 위한 교육과 그렇지 않은 교육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원고의 영업이익 증대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복지후생적 측면이 배제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 피고가 주장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해석에 관한 지방세법 기본통칙[1]에 따르더라도 연수시설과 교육시설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교육시설과 연수시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는 직원들의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행사를 위한 용도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거나 직원들에게 임대하기도 한 점에 비추

1) 지방세법 기본통칙 74-48...1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연수관이란 종업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교양증진 등을 위해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종업원 후생복지시설로서의 건축물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능력향상이나 업무연찬을 위한 종업원훈련시설인 연수원이나 교육원은 과세대상이 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3

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연수시설이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된 취지는 불특정 인원이 짧은 기간 방문하는 형태로 교육이 행해지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본점의 사무소 등과 같이 인구유입 내지 산업집중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물의 시설과 구조, 운영형태상 연수시설로 인정될 경우 복지후생시설로서 시행령의 문언에 따라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연관이 없는 교육 내지 직원들의 복지후생만을 위하여 행해지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만을 연수시설로 보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에 반하여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03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끝.